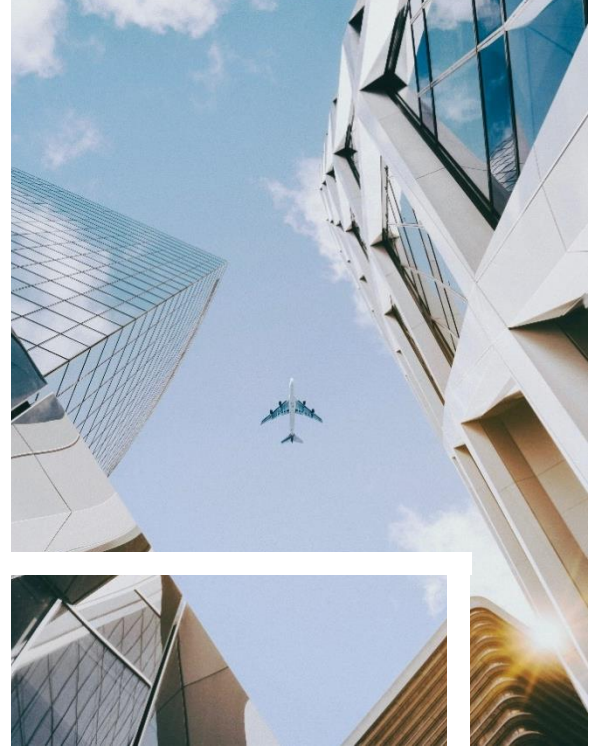


# Samil Global Tax Update

September 2021



## 주요 조세 동향 및 세법 개정사항

영국	지주회사의 자산 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손금 인정
네덜란드	COVID-19 관련 지원 정책 만료 및 후속 조세정책 발표
러시아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효과 및 보고의무 명확화
중국	일방적 이전가격사전결정 신청절차 간소화에 대한 공표
태국	디지털 서비스 부가가치세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삼일회계법인

## 주요 조세 동향 및 세법 개정사항

### 영국

2021년 8월 26일 영국 상급 행정심판소(Upper Tribunal)에서는 기존 1심 행정심판소(First-tier Tribunal)의 판결을 뒤집고, 지주회사의 회사 자산 처분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영관리비용(Management Expenses)을 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결하였음

#### • 배경

- Centrica Overseas Holdings는 Centrica PLC 그룹의 지주회사로, 네덜란드 내 4개의 자회사를 소유한 네덜란드 지주회사 Oxxio BV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었음
- 2011년 3월 Centrica는 2개의 네덜란드 자회사 자산과 Oxxio BV의 지분 1/3을 양도하였음
-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2009년 7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발생한 3개 은행 및 자문사(도이치뱅크, PwC, 드 브로우 블랙스톤 웨스트브룩)에 대하여 약 250만 파운드의 수수료가 발생하였고, Centrica 측은 해당 비용이 영국 법인세법 제1219조에 따른 투자자산에 대한 경영관리비용으로 지주회사의 세금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 하지만, 영국 국세청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Centrica는 2017년 5월 1심 행정심판소에 불복청구를 하였음
- 2020년 4월 1심 행정심판소는, 해당 수수료가 Centrica Overseas Holdings

(지주회사)의 내부적인 기능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Centrica PLC 그룹의 기능을 통하여 수행한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영국 법인세법 제1219조 제1항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여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Centrica 측은 상급 행정심판소에 항소하였음

#### • 판결 내용

- 1심 행정심판소에서는 자산 및 주식 매각의 의사결정이 지주회사의 이사회에 의해서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영국 법인세법 제1항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린 반면, 상급 행정심판소는 납세자의 손을 들며 지주회사의 이사회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형식요건은 제1219조에서의 주요 판단기준은 아닌 것으로 봄
- 오히려, 상급 행정심판소는 해당 비용이 Centrica Overseas Holdings 지주회사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며, 지주회사의 이사들이 자산 및 주식 매각 의사결정에 참여하였음이 명백하고 적절하게 문서화되었다는 것에 근거하여 Centrica의 항소를 받아들였음

#### • PwC Observations

- 영국 상급 행정심판소의 결정의 경우, 우리나라 조세심판원 이상의 사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판결이 영국 내 지주회사가 있는 그룹이 그룹의 자산이나 지분을 양도할 때 영국 법인세법 제1219조를 적용 받기 수월해질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영국 지주회사가 있는 경우, 8월 26일 상급 행정심판소의 판결 내용을 통하여 자문사 수수료 등의 경영관리비용이 발생하는 거래에 대하여 해당 비용을 손금으로 공제받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네덜란드

2021년 8월 30일 네덜란드 경제부 · 재정부 · 고용부 공동발표에 따르면, 세금납부 유예혜택을 포함한 실업 지원, 임금 보조금, 교육훈련 등 일반 지원 정책들은 10월 1일부로 만료됨

최근 백신 보급으로 인한 COVID-19 상황 정상화를 고려하고, 경기 회복에 탄력을 주기 위한 조치이며, 일부 특별 지원 정책들은 2022년까지 연장됨

### • 배경

- 발표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2020년 3월 COVID-19 유행 이후 각종 지원 정책으로 총 800억 유로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됨
- 세금납부 유예혜택의 경우 369,000명의 사업자가 신청하였고, 404억 유로에 달하는 납부유예세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166억 유로만 현재 징수됨
- COVID-19 지원 정책이 지속되면 노동시장의 공급부족 등을 통하여 경기 회복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정책들을 제외하고 연장하지 않기로 함

### • 세금 징수 계획

- 네덜란드 국세청 및 관세청은 9월에 납부 유예를 선택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세금 징수를 시작하고, 세무 당국이 먼저 납세자에게 미지급 부채 및 납부 유예 선택 가능여부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임
- 개인 및 법인 사업자는 10월 1일부터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납세유예옵션이 없으며, 첫번째 납부는 2022년 10월 1일까지 이루어져야 함
- 납부유예세금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이자율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이자율을 0.01%에서 1%로 인상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1%씩 추가로 인상하여 2024년 1월 1일에 COVID-19 이전의 이자율인 4%로 돌아갈 것이라 발표함

### • PwC Observations

- 네덜란드를 포함한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의 COVID-19 관련 세제 혜택의 만료일이 임박하여 해당 혜택을 누리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됨
- 국가별로 조세 지원 정책을 연장할지 여부는 각 국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따라 다르므로 국가별 정책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

러시아 재무부는 외국법인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수령할 때의 조세 영향과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기업의 보고의무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행함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채권 이자**

- Article 246과 247을 인용한 가이드라인 03-08-05/62784는 309조에 명시된 러시아 원천소득을 창출하는 외국법인은 러시아 세법상 법인세 납세자로 간주되어 러시아 법인세법 적용을 받는다고 밝힘
- Article 309, section1(3)에 따르면 해당 소득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채권 및 러시아 기업의 기타 채권으로부터의 이자수입을 포함함
- 외교부는 Article 310, section1에 따라 외국법인의 러시아 내 활동으로 인한 러시아 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러시아 법인인지, 법인 또는 고정시설을 통해 러시아에서 운영되는 외국법인 또는 러시아의 개인 사업가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러시아 소득세 납세자(납부대리인)에 의해 계산 및 원천징수되어야 한다고 명시함(단, section2에 명시된 경우는 제외)
- Section2(7)는 러시아 정부 또는 그 지역 공공 당국이 발행한 채권, 또는 지방자치단체 채권에 대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러시아 납부대리인이 법인세를 계산하거나 원천징수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러시아 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정당한 수혜자를 위해 활동하는 제3자 외국법인에게 직접 소득을 지급한 경우, 러시아 납부대리인이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다고 밝힘

- **보고의무**

- 외국법인은 매년 3월 28일까지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주주에 대한 정보를 러시아 세무당국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해당 보고서는 외국법인에 대한 개인 또는 공기업의 직접 및 간접 지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 간접 지분 투자 절차(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함
- 러시아에 등록되어 있고 제174조 2항에 명시된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보고의무가 면제됨. 단, 해당 외국법인이 러시아 세무당국에 등록된 이유가 러시아 내 전자적 용역의 제공 외에 추가로 존재하는 경우 상기 보고의무가 적용됨

- **PwC Observations**

- 러시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채권을 보유한 비거주자의 경우 해당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대상이 아님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였으므로, 해당 이자 수취 시 원천징수와 관련한 논쟁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서,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등록되어 있으면 별도 보고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바 러시아 내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 현지 등록 요건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기타 보고의무가 있는 업체의 경우 외국법인의 현지 보고 의무 기준이 재정비되었으므로 매년 제출해야 하는 보고 의무를 숙지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중국 국세청(China's State Taxation Administration, "STA")은 7월 27일 일방적 이전가격사전결정 (Advance Pricing Agreement, APA)의 신청 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였음. 국세청은 이전에 일방적 APA 신청의 간소화된 절차 초안에 대한 공개적 협의를 진행한바 있음

### • 배경

- 2019년에 중국이 체결한 일방적 APA의 수는 2017년과 2018년에 비해 크게 증가함. 이는 일방적 APA에 대해 중국 세무당국이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일방적 APA를 통해 조세불확실성을 지양하고자 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음
- Public Notice 24는 중국 국세청의 과세문제를 단순화하고자 하는 'Spring Breeze Actions'의 일환으로 공표됨. 공표안은 협의 초안에 비해 일방적 APA의 간소화된 절차 적용하기 위한 다음의 조건을 더욱 완화하였음
  - ① APA신청 3개월 전에 이전가격서류 제출 요건 제거
  - ② 납세자의 연간 특수관계자 거래 공개 양식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신청거부 규정 제거
  - ③ 특수관계자 거래, 사업환경, 기능 및 리스크가 전년도 대비 상당히 변화한 경우 신청거부 규정 제거

### • 간소화된 일방적 APA 신청 가능자

- 담당 세무서가 일방적 APA 신청서를 승인하기 위해 "조세이슈사항 통지서

(Notice of Tax Related Issues)"를 제공하는 과세연도로부터 이전 3년간 연간 특수관계자 거래액이 4천만 RMB를 초과하는 기업이면서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조건1:** 기업이 지난 3 과세기간 동안 세무당국에 이전가격 동시적 보고서(Contemporaneous TP Documentation)를 제출하였을 것
- 이는 신청자가 (i)회사의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이 이전가격 로컬파일 작성기준을 충족하고, (ii)회사는 최소 3년 동안 운영되었어야 함을 의미함
- **조건2:** 기업은 지난 10 과세기간 동안 APA를 시행한 적이 있으며, 해당 APA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였을 것
- **조건3:** 지난 10 과세기간동안 세무당국에게 특별 세무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과세당국의 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짐
- 단, Public Notice 24는 과세당국이 하기의 경우 신청서를 승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 ① 기업이 세무 당국의 특별 세무조사 또는 기타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
  - ② 기업이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연간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양식을 제출하지 않고 적시에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 ③ 기업이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이전가격 동시적 보고서(Contemporaneous TP

Documentation)를 준비, 제공하지  
않음

- ④ 기업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된 정보가 세무 당국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적시에 보충/수정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⑤ 기업이 현장 기능 및 리스크 관련  
인터뷰를 수행하는데 있어  
과세당국과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

● **간소화된 일방적 APA 절차의 기타 요구사항**

- **3 단계:** 간소화된 절차는 신청서 평가,  
협상 및 서명, 실행 및 모니터링의  
3 단계로 구성됨
- **세무당국의 분석 및 평가 기간:**  
세무당국은 분석, 평가, 및 현장 기능 및  
리스크 인터뷰를 수행한 후 90 일  
이내에 조세이슈사항 통지서를 기업에  
전달
- **협상 및 서명 단계의 구체적 소요기간:**  
기업과의 협상은 조세이슈사항  
통지서가 기업에 전달된 날(가령,  
일방적 APA 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간소화된 절차는 종결됨
- **간소화된 일방적 APA 의 적용:** 현재  
간소화된 절차는 2 개 이상의 지역,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및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도시들의 세무당국과  
연관되어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간소화된 절차에 따른 일방적 APA 적용  
기간:** 세무당국이 기업에 조세이슈사항

통지서를 발행한 과세연도부터  
3~5 년간 연속적으로 적용

● **Public Notice 24 의 실질적 의의**

- **STA 관점 :** 경제적 불확실성의 시기에  
일방적 APA 시스템을 개선하여 기업에  
보다 효과적인 과세가 가능함
- **담당 세무당국 관점 :** 일방적 APA 의  
수요에 보다 많이 대응할 수 있으며, 기업이  
이중과세를 피하고 이전가격 책정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협력 가능
- **기업 관점 :** 이전가격 확실성이 높아지며,  
신속한 일방적 APA 체결로 인해 연말  
이전가격 조정 수행이 가능하도록 은행에  
APA 패키지를 제출하여 이전가격에 따른  
외환 유입/유출 검토를 받을 수 있음

● **Public Notice 24 의 수혜 기업**

- 이전가격 조사, 이전가격 리스크 대응,  
세무당국의 경고 하의 자체 조정 등의  
형태로 이전가격 조사를 수행한 바 있는  
기업
- STA 및 지방 세무당국의 다국적 기업 이익  
수준 모니터링 시스템의 범위에 포함되고  
세무당국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기업
- 쌍방적 APA 를 시행했지만 만료 후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APA 만료 후  
이익수준에 큰 변동 또는 변화가 있는 기업
- 쌍방적 APA 신청이 오랫동안 큰 진전이  
없었고 소급적 세무조정 위험이 높은  
기업
- 단일한 특수관계자 거래가 이루어져  
기능과 위험이 간단하지만, 해외

특수관계자 거래 금액이 커서 높은 이전가격 위험에 노출된 기업

- 세무당국과 관세당국에 대해 특수관계자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거나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
- COVID-19으로 인해 2020년 이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으며 상황이 예상되는 기업으로서 국내외 특수관계자의 이전가격을 준수하고 있는 기업

#### • PwC Observations

- 지난 10 과세기간 동안 APA를 시행하였고 해당 APA의 요구사항을 준수한 기업으로서 지난 10 과세기간동안 세무당국에게 특별 세무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과세당국의 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진 경우 해당 회사는 담당 과세당국과 간소된 절차에 따라 일방적 APA를 체결하는 것이 더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 간소화된 절차로 인해 기존의 Public Notice 64(State Taxation Administration Public Notice [2016] No.64)에 의한 APA 적용단계 6 단계가 3 단계로 간소화되어 일방적 APA 신청의 효율성이 증대됨
- 소요시간이 단축되도록 세무당국에 압력을 가하는 효과가 있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무당국의 분석 및 평가 기간이 90 일 이내, 협상 및 서명 단계의 구체적 소요기간이 6개월 이내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임

## 태국

지난 2021년 2월 11에 발효된 디지털 서비스 세법에 따르면 2021년 9월 1일 이후부터 (a) 해외 전자적 용역 제공업체 및 (b) 전자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자에 해당하는 태국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령한 수익이 1.8백만 바트를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록,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부과됨

이와 관련하여 2021년 7월 7일 태국 국세청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태국의 부가가치세 미등록자에게 제공하는 전자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의 초판을 발표하였음. 이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서비스 세법의 적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공급자가 수행해야 하는 준수 절차를 다루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주요 내용

##### (1) '전자적 용역'의 정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광고 등 전자적 용역의 정의에 포함되는 용역 유형과 통신 서비스, 송금 서비스 등 전자적 용역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용역 유형의 예시를 포함하고 있음

흥미로운 점은 미리 녹음된 미디어를 통한 원격 교육 용역은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반면, 실시간 교육 용역은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 용역의 소비장소 판단

이번 가이드라인은 어떠한 용역이 '태국 내에서 소비'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였음. 이에 따르면 고객

정보상 해당 고객이 태국에 위치한 것으로 표시되는 경우 해당 용역은 태국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함.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용역 공급자는 다음의 고객정보 중 하나에 근거하여 고객의 위치를 판단하여야 함

- (1) 결제정보
- (2) 거주 정보
- (3) 접근 정보

만약 위의 정보가 일관되지 않는 경우 용역 공급자는 고객의 위치 또는 용역이 소비되는 위치에 대한 일관된 증거를 최소 2개 이상 확보해야 함

### (3) 고객의 부가가치세 등록 여부 확인

기본적으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 제공업체 및 전자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고객을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고객이 부가가치세 등록 정보를 제공한 경우 용역 제공자는 고객의 부가가치세 등록 여부를 완전하게 검증할 필요는 없음. 이에 비추어 볼 때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 제공업체 및 전자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고객에게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번호를 요청하고 이에 의존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해당 용역 제공업체는 국세청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고객의 부가가치세 등록 여부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검증할 수도 있음

### (4) 전자 플랫폼을 통한 용역의 제공

전자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다음의 모든 절차를 따라 플랫폼을 통해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비거주 용역제공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 (1) 용역의 제안
- (2) 대금 수령
- (3) 용역의 전달

### • PwC Observation

- 이번 태국 국세청의 가이드라인은 새로 발효된 디지털 서비스 세법의 적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는 반면, 다음을 포함한 여러 쟁점이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됨
  - (1)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이전보다 명확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용역의 경우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임. 예를 들어, 디지털 토큰/암호화폐(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무형 자산)의 전송은 전자적 용역으로 간주되는지 혹은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송금 서비스’ 또는 ‘전자 바우처 전송’으로 간주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2) 가이드라인에는 고객 정보가 일관되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용역 제공자가 고객의 위치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현지 디지털 서비스 세법의 도입 초기단계인만큼 현지에서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속 법령을 유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서,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비거주 용역 제공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현지 규정을 참고하여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현지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Global Tax Services 본부

**이중현, Partner**  
02 709 0598  
alex.lee@pwc.com

**김주덕, Partner**  
02 709 0707  
michael.kim@pwc.com

**김찬규, Partner**  
02 709 6415  
chan-kyu.kim@pwc.com

**김홍현, Partner**  
02 709 3320  
hong-hyeon.kim@pwc.com

**박인대, Partner**  
02 3781 3268  
in-dae.park@pwc.com

**소주현, Partner**  
02 709 8248  
so.juhyun@pwc.com

**이경민, Partner**  
02 3781 1550  
kyungminlee@pwc.com

**이동열, Partner**  
02 3781 9812  
dong-youl.lee@pwc.com

**이윤석, Partner**  
02 3781 2374  
yoon-sok.lee@pwc.com

**전원엽, Partner**  
02 3781 2599  
won-yeob.chon@pwc.com

**조정환, Partner**  
02 709 8895  
junghwan.cho@pwc.com

Global Tax Update에 소개된 주제 중 주요 주제에 대해 삼일회계법인의 전문가가 직접 설명하는 동영상을 [삼일 공식 YouTube 채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Global Tax Services 본부는 국제조세전문 컨설팅 조직으로서 전문성과 다양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다국적기업이 해외신규투자/인수합병/운영/철수 시 직면하는 각종 이슈에 대한 최상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뉴스레터는 삼일회계법인의 고객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배포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문제나 세무이슈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일회계법인의 뉴스레터에 담긴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